

『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「지방회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사항을 반영하고, 행정안전부 예규 「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」 (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, '19.5.9.개정, '19.5.9.시행)의 반영으로 금고지정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함.

3. 주요내용

- 인용법령의 제명 및 조항 변경(안 제1조)
 - 「지방재정법」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
→ 「지방회계법」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
- 금고의 자격요건 변경(안 제2조)
 - 「은행법」에 의한 금융기관
→ 「지방회계법」 제38조제1항에 따른 은행 및 금융기관
-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(안 제5조)
 - 9명 이내의 위원 →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
- 구미시 금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관한 사항 변경(별표)
-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회계법」, 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,
「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- 「지방회계법」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 「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」이 2019. 5. 9. 개정,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금고지정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금고를 안정적으로 운영관리 하고자 제출된 안전임.

○ 주요 개정내용은

- 금고의 설치에 대한 근거법령의 변경으로 인용법령의 제명 및 조항을 「지방재정법」 제77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서 「지방회계법」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로 수정하고,
- 「지방회계법」 제38조에 따라 금고의 자격요건을 「은행법」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「지방회계법」 제38조제1항에 따른 은행 및 금융기관으로 변경하여 제2금융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를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확대하였음.

- 또한,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9명 이내에서 9명 이상 12명 이내로 변경하여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 「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」의 규정과 일치시키고,
- 「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구미시 금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관한 사항(별표)을 정비하였음.
-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에 따른 금고지정 평가항목 배점의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,
 -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평가 배점을 현행 31점에서 27점으로 축소하였고,
 -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분야 배점을 18점에서 20점으로,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의 배점을 20점에서 21점으로, 금고업무 관리능력의 배점을 22점에서 25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,
 -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에 대한 배점을 9점에서 7점으로 조정하였음.

○ 검토 결과,

-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에 따라 금고지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시 금고 지정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